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계 · 주의 요구

제 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및 조치명령 미이행 등 부적정

기 관 명 울산광역시

훈계 대상자 울산광역시 ○구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(전 울산광역시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)

내 용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는 2013. 1. 14.부터 2015. 7. 10까지 울산광역시 ○○
○○과에서 산림·녹지 개발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.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(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)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
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·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·
인가·승인·면허·결정·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 등의 확정·허가 등
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¹⁾(이하 "사전
재해영향성 검토협의"라 한다)를 하도록 되어 있고

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

1)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
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가) 시·도지사 및 시·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
의: 해당 시·도지사

나)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군·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전재해
영향성 검토협의: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

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울산광역시에 ○○○○과 등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명령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.

1.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미 이행

울산광역시(○○○○과)에서는 [표1]의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계획 등의 확정·허가 등을 하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대상임에도 검토협의를 받지 아니하여 대상 사업장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.

[표1]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미이행 사업 현황

대상지	인·허가 현황				관련(협의) 부서
	인·허가일	면적(㎡)	목적	허가자	
○○면 ○○리 산0 일원	2015.04.16.	33,642	○○ 공원조성	울산광역시장	○○○○과
○○면 ○○리 산00 일원	2015.04.02.	92,760	○○ 공원조성	울산광역시장	○○○○과
○○읍 ○○리 산00 일원	2015.04.16.	79,300	○○ 공원조성	울산광역시장	○○○○과
○○면 ○○리 산000 일원	2015.04.16.	26,860	○○ 공원조성	울산광역시장	○○○○과
○○면 ○○리 산000 일원	2015.04.16.	46,641	○○ 공원조성	울산광역시장	○○○○과
○○읍 ○○리 산00 일원	2015.04.16.	52,476	○○ 공원조성	울산광역시장	○○○○과
○○면 ○○리 산00 일원	2015.04.16.	27,436	○○ 공원조성	울산광역시장	○○○○과
○○면 ○○리 산00 일원	2015.04.02.	27,499	○○ 제2공원조성	울산광역시장	○○○○과
○○ ○○동 산000 일원	2015.04.02.	55,930	○○ 공원조성	울산광역시장	○○○○과
○○ ○○동 산000 일원	2015.04.02.	246,460	○○○ 공원조성	울산광역시장	○○○○과

※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2.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결과 조치명령 이행 등 관리 부실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조(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내용의 이행)의 규정에

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(울산광역시 ○○○○과)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,

또한 같은 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해야하고,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,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(울산광역시 ○○○○과)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울산광역시(○○○○과, ○○○○본부)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[표2]와 같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지 않아 일부구간에 토사가 유출 되거나 산마루 측구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의 위험성이 존치하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.

[표2]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및 조치명령 등 미이행 현황

대상지	인·허가 현황			준공일	부적정 사항	
	최초신청 인·허가명	규모	목적		소관	미이행 사항
○○~○○1 도로개설공사	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	L=8.0km B=20.0m	도로 개설	'19.12.31.	○○ ○○ 본부	- 사면 일부구간 슬라이딩(토사유출) 현상 발생 - 보강대책 등 미이행(보강대책 등 수립 중)
○○면 ○○리 토석채취 사업	토석채취허가	A= 240,993 ㎡	토석 채취	'22.11.30.	○○ ○○ 과	- 사면 소단부 수목식재 부실 - 사면녹화(냉쿨식물) 미이행 - 침사지 토사 퇴적으로 유지관리 부실 (준설 계획 등 미수립) - 산마루 콘크리트 측구 공사 미이행

※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
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